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2022. 5. 11.

운영지원단

## 1. 개요

- 2021. 12. 22. 출범된 제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논의 경과 보고임

## 2. 제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개요

### 가. 출범 및 구성

#### ■ 사법행정자문회의(제15, 16차) 결정

- 2021. 9.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TF가 구성됨
- 2021. 10.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상설 분과위원회로서 법관 외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추천방식과 직접 임명·위촉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구성하기로 함. 제1기 분과위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은 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②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로 하기로 함

#### ■ 구성

##### ● 분과위원회 위원(총 13명)

-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분과위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과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직접 임명·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13명임

##### - [참고]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출신 기관
1	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 서울대 법전문 교수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출신 기관
2	위원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3	〃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4	〃	박양호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5	〃	오은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	기획재정부
6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7	〃	이국윤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8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9	〃	이현경	국회 예산정책처 부이사관	국회
10	〃	임선숙	변호사, 전 광주지방법변호사회장	
11	〃	장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법원장회의
12	〃	최원석	SBS 기자, 전 SBS 보도국장	
13	〃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대한변협

● 간사 및 서기

- 간사: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기: 노순범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 운영지원단 등 배석 인원

- 기우종 사법지원실장, 이재원 사법정책심의관, 김범일 인사담당관

**나. 연구·검토 안건**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다음의 4가지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1기 분과위에서는 ①, ② 안건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기로 함

- 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 ②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 ③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 ④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 3. 제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 1) 제1차 전체회의(2021. 12. 22.) 주요내용

##### ■ 연구·검토할 세부 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안건과 관련하여 현행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방안, 다양한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방안 등을 소주제로 하여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 안건과 관련하여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 및 확보 방안, 재판연구원 외의 각종 재판보조인력(사법보좌관, 가사조사관, 양형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등)의 확보 방안 등을 소주제로 하여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 일정은 한 달에 1회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차례 회의 이후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함

#### 2) 제2차 전체회의(2022. 1. 26.) 주요내용

##### ■ '법조일원화 시대의 바람직한 법관상' 및 '현행 법관 임용절차에 대한 평가' 관련 발제 및 토론이 아래와 같이 있었음

##### ● 발제(이국운 위원, 김신유 위원)

- 이국운 위원: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과 관련하여 레지던트 에일리언(resident alien)[충실한 거주자(모법적인 시민)이자 포커페이스의 이방인의 의미]이라는 용어를 기초로 설명. 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은 위와 같은 바람직한 법관상의 모습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실제 상황에서 자기 책임으로 내린 법적 판단의 결과와 논변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 또한 법관인사제도 설계에 있어, 법률가 집단이 과연 시민적 신뢰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문직업적 공동체로서의 통합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김신유 위원: 바람직한 법관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의되는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기준(미국과 영국에서도 법관의 자질로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능력'이고 이에 더하여 훌륭한 성품, 법관으로서의 기질, 다양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바람직한 법관상 논의의 시사점 및 검토 필요사항 등을 제시하고, 일반 임용절차에서의 논의 필요



사항과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의 논의 필요 사항을 나누어 발제함

● 주요 토론 내용

-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다면 그 다음 중요 요소는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봄
- 이상도 좋으나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데, 통계상 법원 접수사건의 상당 비율이 복잡한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민사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법관상과 관련하여, 성실함, 당사자에 대한 배려, 삼가는 마음 등이 필요하나 이를 임용절차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 법관 임용절차가 지원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경력자의 전문성을 임용과정에서 고려하여,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제3차 전체회의(2022. 2. 23.) 주요내용

■ 인사 및 채용 전문가로부터의 강연 청취 및 그에 관한 의견교환이 아래와 같이 있었음

● 강연(서울대 강성춘 교수, 인사혁신처 김성훈 국장)

- 강성춘 교수: 민간분야에 있어 “채용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발표함. ① 누구를 선발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 잘하고 있는 조직은 인재상을 간단하게 정의함.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인재상을 ‘정말 똑똑한 사람’ 이렇게만 표현함.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적자본(개인의 자질), 사회적 자본(남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조직자본(이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 비용과 가치의 교환 관계의 관점에서 인재상이 분류되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역량모델링이라는 내부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도출해 거기로부터 구체적 평가 내지는 선발 기준들을 찾아갈 수 있음. ② 좋은 사람 유인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채용방식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채용인력·부서도 키우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은 현업 부서에도 임용 관련 역할을 많이 부여하고 있고, 점점 출신학교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사람들의 욕구가 돈 보다 성장과 발전 같은 다른 가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채용된 사람의 기존 업무환경과 새로운 업무환경이 유사할수록 성과가 높음. ③ 자질 평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에서는 예전과 같은 선발시험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면접방식을 많이 사용함
- 김성훈 국장: 개방형 직위제도에서, 유능한 외부 인재를 모실 수 있도록 보수,



**임기연장 등에서 유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도 경력법관 채용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라든지 에너지 같은 **전문분야에서 인재채용이 어려울 수 있어 민간 스카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임용절차에서 역량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적인 직무상황에서 지원자의 대응 방법 관찰, 1:1 토의 등을 통해 지원자가 나타내는 행동특성들을 다수의 평가자가 판단해 냄. 그리고 **잘못된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내용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음**

#### ■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기본 논의'에 대한 발제가 있었음

##### ● 발제(한영화 위원)

-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를 고려함에 있어 먼저 법조일원화 취지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입체적인 조망이 필요함. 법원의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재판연구원의 임기와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기간 간의 상관성, 재판연구원 출신 법관 임용을 비율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 등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재판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지위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있는데,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비정형적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률적인 배치가 아니라 신청을 전제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관점(업무에 실질적인 도움 필요), 재판연구원의 관점(불안정한 지위 개선), 국민의 관점(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예비판사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4) 제4차 전체회의(2022. 3. 22.) 주요내용

#### ■ 정책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의 연구 결과(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발표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 ● 발표(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

- ① 재판연구원 제도의 역사, 현황 그리고 지향점, ② 재판연구원 투입의 효과(양적 연구 결과), ③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상 인터뷰·설문조사 결과 중 중요내용(질적 연구 결과), ④ 적정 재판연구원 수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 순으로 발표함
- **연구진은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재판연구원 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증원 시 고려해야 할 1차 요소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충실한 보장이고, 2차 요소는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 새로 법조인이 된 재판연구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우수한 법관 자원의 확보 등이 있음. **고등법원**



우선 배치가 일응의 합리성은 있으나, 장기미제 등 상황 고려하여 중요사건을 진행하는 1심 합의부나 단독재판부에도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 고등법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1명의 고등법원 법관에게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검토할 기록의 양, 심급의 무게, 재판연구원 교육 효과, 법관의 효율적 업무 처리 등을 고려). 지방법원 항소부 중 대등재판부는 재판부당 원칙적으로 2인, 장기적으로 3인 배치가 바람직하고, 지방법원 합의부 중 대등재판부도 원칙적으로 2인 배치가 타당함(단,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대등부와 같이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3인 투입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민사 고액 부장단독, 비대등부로서의 지방법원 항소부 및 합의부에도 원칙적으로 1인 배치가 타당함. 일반 단독 재판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 2인당 1명 또는 3인당 1명 배치가 타당하나, 과도기적으로 단독부장 중 법조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에 한해 원칙적으로 1인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2021년 말 재판부 배치표를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대략 고법은 119명 증원, 지법 대등부와 비대등부는 429명, 단독은 297 ~ 450명, 합산하여 845 ~ 998명 증원이 필요함. 현재 연구원 정원이 300명이므로 300명을 더하면 결국 현 시점 기준 적정 수는 총 1,145 ~ 1,298명이고, 판사 정원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기준 적정 수는 1,220~1,383명임. 그리고 재판연구원 수를 늘리는 방법보다 재판연구원 임기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정 수를 달성함이 바람직함

■ **제3차 회의에서의 발제문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기본 논의'에 대한 종합토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 **주요 토론 내용**

- 재판연구원의 증가가 재판업무효율에 관한 지표들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한 지표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존재 및 재판연구원이 질적 차원에서 재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계량적 자료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재판연구원 규모의 확대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법원순혈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직의 인재 채용이 조직에 보다 익숙한 인재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 채용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는 재판연구원과 법관 선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꼭 법원순혈주의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음
- 사실심 충실화 및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재판연구원 외의 재판보조인력(가사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 제1소위원회

- 담당안건: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 구성원: 김신유, 이국운, 이동진, 이현경, 임선숙, 최원석, 한영화(이상 위원, 가나다 순)

##### ● 제2소위원회

- 담당안건: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 구성원: 박은정 위원장, 김자림, 박양호, 오은실, 이계정, 장준현(이상 위원, 가나다 순)

#### ▣ 각 소위원회 논의 경과

##### ● 제1소위원회

- 제1차 회의(2022. 4. 11.) 주요내용
  - 김신유 위원, ‘법조일원화 시대의 바람직한 법관상 및 일반 임용절차 개선 방안’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발제를 함

- 바람직한 법관상 관련하여, 법관 임용 시 핵심적인 평가요소(우수한 실무능력, 훌륭한 성품,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 등) 설정,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성품적 지표에 대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역량 모델링 관련 논의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함
- 일반 임용절차 개선 방안으로, 실무능력 평가 개선 방안, 면접절차 개선 방안,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각종 의견조회의 실질화 및 전문화 방안, 지원자의 전문성을 임용절차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법관 지원을 저해하는 현실적 장애 요인 및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 주요 토론 내용

-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지원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까다롭거나 법관이 아니면 모를 것 같은 내용까지 압박하여 면접하고,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임. 따라서 면접 문항의 수준과 범위를 통제하고, 준비 시간을 보다 여유



있게 배정하며, 점수를 표준화하여 원칙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주되 특히 우수하거나 특히 부족한 지원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상당한 점수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자와 지원자 양측을 고려해야 하고, 법조일원화에서 성품적 지표를 네거티브 요소가 아닌 포지티브 요소로도 할 수 있음.** 또한 법관 임용 후 추적 연구를 병행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형요소를 두 단계로 하여, 먼저 법관 자질이 부족한 자를 배제하는 단계를 두고 이후 단계에서는 더 좋은 분을 선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법관 임용에 있어 대법관회의 동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법조경력자의 변론 경험도 중요하고, 모의재판 절차를 통해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사법적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생각해 볼 수 있음

#### - 제2차 회의(2022. 5. 2.) 주요내용

- 김신유 위원이 **‘법률서면 작성평가 폐지 및 임용절차상 평가방법 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요사안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경우, 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5년 이상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함**
-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 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됨**
-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등 기존 시험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하여,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됨**

#### ▪ 주요 토론 내용

- 경력자 선발이라는 취지와 지원자 부담 측면, 법원에서 우수한 경력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법조경력 7년 이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류심사에 있어 평가위원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의 개수뿐만 아니라 각 조의 구성원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험 축적 측면에서 연임도 긍정적이라 생각함
-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정원은 지원자의 지원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위원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 숙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나, 어느 한두 위원의 관점이나 평가가 논의를 주도하지**





아니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함. 또한, 서류전형평가위원의 경험의 장·단에 따라 평가기준에 일정한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일관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위원 중 다분히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를 연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변호사 시험 등에 합격한 사실만으로도 성실성, 유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요 과목에 대한 이수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
-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시험성적을 정성평가 부분에서 고려할 수 있고, 법조경력 7년,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지원자들이 그동안의 활동 내역이 많을 것이고 과거 성적을 보는 것은 오히려 그 명분이 적다고 보여 짐. 따라서 그 시점에는 기존 시험성적 반영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2소위원회

##### - 제1차 회의(2022. 4. 5.) 주요내용

-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되었고, 재판연구원 증원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음

- 법조일원화 추진에 따른 법관 고령화, 대등재판부의 확대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현재 재판연구원 수는 이에 대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보장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 단기적으로 사물관할 변경에 따른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신설 등을 대비하여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필요도 있음
- 법조일원화제도가 전면 시행될 시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수치와 근사하게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현실적으로 증원이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물적 설비, 필요 공간 등의 측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원과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제2차 회의(2022. 4. 21.) 주요내용

- 운영지원단(이재원 사법정책심의관), ‘재판연구원 배치기준 및 부족한 원수 관련 회의자료’를 요약 보고함.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사안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함

- 재판연구원 증원과 관련하여 단기적 증원 방안과 중장기적 증원 방안을 구분하여



###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함

- 단기적 증원 방안에 관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지방법원 고액 부장 단독 재판부'에 우선적으로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됨. 다만, 세부적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 ① 고등법원 >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sup>1)</sup> 재판부 >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 ② 고등법원 >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중 합의사건 재판부 >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중 항소사건 담당 재판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 ③ 고등법원 > 지방법원 대등재판부(합의·항소) >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 단기적 증원 규모에 관하여 복수의 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고등법원의 경우 ① 고등법원 각 재판부에 3인 배치하는 안, ②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 또는 경력 20년 이상 고법판사 3인 재판부에 3명, 기타 재판부 중 형사재판부에 3명, 나머지 재판부에 2명씩 배치하는 안, ③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 또는 경력 20년 이상 고법판사 3인 재판부에 3명, 기타 재판부에 2명씩 배치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의 경우 재판부당 2명을 배치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의 경우 재판부 증설효과를 기준으로 ① 재판부당 1명을 배치하는 안(98명), ② 재판부당 0.5명을 배치하는 안(49명)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결국 단기적 증원안에 따르면 최소 135명, 최대 256명임
- 중장기적 증원 규모에 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 5) 제5차 전체 회의(2022. 4. 26.) 주요내용

### ■ 국내·외 재판보조인력과의 근무경험에 대한 발표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 발표: 백강진 광주고등법원(전주부) 부장판사[前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

### ○ 국내에서의 재판연구원과의 근무 경험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함

1) 소가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 고법, 지법을 막론하고 대등재판부 형태의 재판부에는 재판연구원 2인 이상이 필수이고, 일정연차 이상의 법관에게는 단독, 합의부를 막론하고 전속으로 재판연구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경력 법관으로서의 자긍심, 육체적 업무수행 능력의 감퇴, 형식적인 사항보다 변론 진행이나 올바른 판결의 결론 도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

○ **국내와 UN 재판소에서 각 경험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함**

- 법관은 여러 사람의 피드백이 추가된 판결문 초고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뿐 처음부터 법관이 판결문 초고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희귀함(발표자 본인이 국내 경험을 토대로 판결문 초고를 직접 써서 보조인력에게 제공하자 놀라는 경우가 많았음). 재판부 내 모든 법관의 보조인력은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 관여하였음(우리나라의 실무관과 같이 형식적,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음)

- 해당 직원들은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변호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UN 채용절차에 따라 재판관이 직접 인터뷰를 거쳐 선발하였음. 초급 직원(P2: 초고정도 작성하는 직급)의 경우, 월 5천달러 정도 보수가 지급되었고, 어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전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재판관의 출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 **이상의 경험을 통해 재판연구원 제도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함**

-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이상 과거의 부장판사-배석판사 모델은 경력법관-재판연구원 모델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법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현 3인 합의부를 대부분 해체하여 원칙적 단독 재판으로 바꾸면서 재판연구원을 모두 배치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함이 타당함**

- 법관이 형식적 업무처리에 주로 매몰된다면 이른바 '좋은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우므로 형식적 업무들은 사법보좌관, 참여관, 실무관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재판연구원이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임. 국제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 형식적 사항에 대부분 관여하지 아니함

- **재판연구원 제도가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고, 국제재판소의 경우 다수 인력의 기초 검토와 다양한 피드백이 첨부된 판결 초고에 대하여 재판관은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판결의 질이 상당히 높은 편임**(모든 문장에 각주가 달려 있음). 법관이 처리하고 있는 몇몇 공증성, 비분쟁성 사건들을 과감히 위임하도록 하고, 다른 제도 개편을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 및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 여부



- 법조일원화 정착 및 사실심 충실화를 위하여 재판연구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함

-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방식

- 재판연구원 증원은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법원의 인적구조와 재판부 구성의 변화,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의 특성(난이도·중요성 등), 재판연구원 외의 재판보조인력 확보 문제, 소요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시기(단기/중·장기<sup>2)</sup>)별로 증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규모를 정해 순차적·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연구원 단기적 증원 방안**

- 재판연구원 증원 배치 대상 재판부

- 재판연구원은 단기적(2~3년)으로 고등법원 재판부,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우선적으로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그 증원필요인원 규모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증원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재판연구원 배치 순위

- 재판연구원의 증원 배치 순위는 ① 고등법원 → ②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 ③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연구원 단기 증원 규모

- 제2소위원회가 각 재판부별 재판연구원 배치방안을 기초로 산정한 재판연구원 단기 증원 규모(안)

구분(재판부수)	현재 배치	배치방안	증원 필요 인원
고등법원 재판부(108)	201명	Ⅰ안 - 3명 : 고등법원 각 재판부에 3인 배치	123명 <sup>3)</sup>

2) 향후 2~3년 내를 단기로, 그 이후를 중·장기로 구분함



		<b>㉒안</b> - 3명 : 고등부장 3명 또는 경력 20년 이상 고법판사 3인 재판부 36개 + 그 외의 재판부 중 형사재판부 23개 - 2명 : 그 외의 재판부 중 나머지 재판부 49개	<b>74명<sup>4)</sup></b>
		<b>㉓안</b> - 3명 : 고등부장 3명 또는 경력 20년 이상 고법판사 3인 재판부 36개 - 2명 : 나머지 재판부 72개	<b>51명<sup>5)</sup></b>
지방법원 대등재판부(59)	<b>83명</b>	<b>㉑안:</b> 재판부당 2명	<b>35명<sup>6)</sup></b>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증설 기준: 약 98개)		<b>㉑안:</b> 재판부당 1명	<b>98명</b>
		<b>㉒안:</b> 재판부당 0.5명	<b>49명</b>

**-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연구원 증원규모**

- **다수의견(7명):** ㉒안(고등부장 3명 또는 경력 20년 이상 고법판사 3인 재판부, 그 외 재판부 중 형사재판부에 재판연구원 3명 배치, 나머지 재판부에 2명 배치)에 따라 재판연구원 증원함이 바람직함
- **제1소수의견(3명):** ㉑안(전 재판부에 재판연구원 3명 배치)에 따라 재판연구원을 증원함이 바람직함
- **제2소수의견(2명):** ㉓안(고등부장 3명 또는 경력 20년 이상 고법판사 3인 재판부에 재판연구원 3명 배치, 나머지 재판부에 재판연구원 2명 배치)에 따라 재판연구원을 증원함이 바람직함

**-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증원규모**

- 재판부당 재판연구원을 2명 배치함이 바람직함(의견일치)

**- 신설된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재판연구원 증원 규모**

- 재판부 증설효과(98개)를 기준으로 재판부당 재판연구원을 1명 배치하는 방안을 선호함(다만, 그 증원 배치 시기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증원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sup>7)</sup>이 있음)

3) 123명 = 324명(108×3) - 201명

4) 74명 = 275명{(36+23)×3+49×2} - 201명

5) 51명 = 252명(36×3+72×2) - 201명

6) 35명 = 118명(59×2) - 83명



#### 4. 향후 일정(예정)

- 제2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5. 중순
  - 논의안건: 재판연구원 증장기적 증원 방안 등
- 제1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5. 16.(월)
  - 논의안건: 법관 임용절차 관련 실무능력평가 면접 개선방안,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 실질화 방안, 의견조회 관련 변호사협회 등과의 협력 방안
- 제6차 전체회의: 2022. 5. 24.(화)
- 제6차 전체회의까지의 논의 경과를 종합하여 2022년 6월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논의 안건을 보고할 예정 <끝>

7) 위 '재판연구원 증원 배치 대상 재판부' 부분 참조